

장애학생지원 시설강화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8. 8. 31.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 시설강화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장애학생을 위한 무장애 캠퍼스를 구축하고 시설설비 평가요소 점검 및 개선에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 시설에 관한 사항
3. 장애시설물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애학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